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12. 2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 11. 19.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3. 11. 22
- 다. 상정일자 : 제20회 정기회 제5차 위원회('93. 12. 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관리과장 홍기)

가. 제안이유

○ 개정된 도로법('93. 3. 10) 및 동법시행령('93. 8. 14)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 (안 제3조)
    - 과세시가표준액→공시지가, 정액제 확대
  - 2) 점용료등을 조정함 (안 제5조)
    - 전년보다 10% 이상 인상될 경우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
  - 3) 점용료등의 감면범위를 확대함. (안 제6조)
    - 전기, 통신, 가스, 송열, 송유시설 50% 감면
  - 4) 점용허가후 허가취소, 기간단축, 점용하지 않은 경우 점용료를 반환토록 함. (안 제7조)
  - 5)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건설부령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함. (안 제8조)
  - 6) 세입을 시, 자치구 수입으로 구분함.
    - 시수입 :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정수한 수입
    - 구수입 : 폭 20m 미만 도로에서 정수한 수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산정기준을 변경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

로는 점용료의 인상요인이 되었으나, 점용료 조정산식 규정을 신설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인상을 억제도록 하였음.

나. 점용물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지하일 경우 지상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도로점용 허가후 허가취소나 미점용 또는 점용기간을 단축하였을 때에는 점용료 반환규정이 신설되었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시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되었음.

다. 전주, 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토지 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하였음.

라. 이상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93년 3월 10일 개정된 도로법 및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점용허가후 관계부서에서는 교통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이천규 위원) : 사실상 점용료가 인상되는 것 아닌가? 현재 부과한 것도 제대로 징수를 못하는데 점용료를 인상하면 징수하기가 더 어렵지 않은가?
- 답변(건설관리과장 홍기) : 주거용은 인하되고 상업용은 인상된다고 봐야함. 징수는 열심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이 안되게 적극 노력하겠음.
- 질의(김문태 위원) : 점용료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은가?
- 답변(건설관리과장 홍기) : 세수는 약 25%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
----------	-----

제출일자 : 1993년 11월 19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개정된 도로법(93·3·10) 및 동법시행령(93·8·14)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개정골자

- 가.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 (안 제3조)
  - 과세시가표준액→공시지가, 정액제 확대
- 나. 점용료 등을 조정함. (안 제5조)
  - 전년보다 10% 이상 인상될 경우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
- 다. 점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확대함. (안 제6조)
  - 전기, 통신, 가스, 송열, 송유시설 50% 감면
- 라. 점용허가후 허가취소, 기간단축, 점용하지 않은 경우 점용료를 반환토록 함. (안 제7조)
- 마.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건설부령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함. (안 제8조)
- 바. 세입을 시·자치구 수입으로 구분함.
  - 시수입: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 구수입: 폭 20m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 4. 개정근거

- 도로법(1993·3·10 법률제4545호)
- 도로법 시행령(1993·8·4 대통령령체13958호)
- ④ 건행58150-2047(1993·9·7)호

## 5. 개정조례(안) : 별첨

## 6. 예산조치 필요성 : 예산조치 불필요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 2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 징수)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여 당해연도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되어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

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률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일시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시 또는 구 관할구역내의 국도중 고속국도를 제외한 국도를 포함한다)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폭 20m 미만 도로(폭 20m 미만 도로중 시소유 도로는 제외한다)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점용료 산정기준표

(금액 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1,350
	전주와 유사한 것	1개	1년	2,000
	공 중 전 화			54,200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통신시설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 및 통신시설관	직경 0.1m 이하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직경 1m 초과	길이 1m	850 1,750 3,500 5,250 7,000 8,750 17,500
	기타의 관	직경 0.1m 초과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직경 1m 초과	길이 1m	1,300 2,600 5,200 7,850 10,450 13,100 26,2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 설 안 내 표 시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기 타	표시면적 1m <sup>2</sup> 표시면적 1m <sup>2</sup> 1개	1일 1년 1년 300 88,400 73,6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 사의 용도로 일 시 설치한 것 광고 또는 홍보용 기타의 용도	점용면적 1m <sup>2</sup> 표시면적 1m <sup>2</sup>	300 300 300
	아 취	도로 횡 단 기 타	표시면적 1m <sup>2</sup>	1년 176,800 88,4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위	기 간 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sup>2</sup>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 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 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 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4 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sup>2</sup>	토지가격에 0.015 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 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 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 금액	
	육교상가, 기타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점용면적 1m <sup>2</sup>	토지가격에 0.01 을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 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 기타	일시점용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일 300	
	기 타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m <sup>2</sup>	토지가격에 0.00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 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지면적등이 1  $m^2$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m^2$  또는 1m미만인 경우에는 1 $m^2$  또는 1m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 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45원→1,400원, 1,995원→1,950원)
6.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증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7. 위표의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표의 제6호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이외의 점용물.
  - 나.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 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점용한 것” 이외의 점용물
  -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
9.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써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 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표의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 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700,000원으로 한다.
11.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자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lt;별표 2&gt;

점용료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 가 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10/100 + (\text{증가율} - 10/100) \times 3/10\}$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13/100 + (\text{증가율} - 20/100) \times 1/10\}$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16/100 + (\text{증가율} - 50/100) \times 6/100\}$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19/100 + (\text{증가율} - 100/100) \times 3/100\}$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22/100 + (\text{증가율} - 200/100) \times 1/100\}$ ]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25/100 + (\text{증가율} - 500/100) \times 5/1,000\}$ ]